

#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99-13

제출년월일 : '99. 4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개정 이유

농공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가 감면되나 휴·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한 농공단지 부실화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농공단지내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(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)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(안 제24조의 3)

- 황산농공단지
- 만경농공단지
- 서흥농공단지
- 봉황농공단지
- 월촌농공단지

## 3. 참고 사항

지방세법 제276조

도세정 13400-138 ('99. 2. 4)호

#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(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)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1. 황산농공단지
2. 만경농공단지
3. 서흥농공단지
4. 봉황농공단지
5. 월촌농공단지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<p>제24조의3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(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)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황산농공단지</u></li> <li>2. <u>만경농공단지</u></li> <li>3. <u>서흥농공단지</u></li> <li>4. <u>봉황농공단지</u></li> <li>5. <u>월촌농공단지</u></li> </ol>